

육음번호 구성내역서

① 연월일	② 구분	③ 육음번호	④ 부위명	⑤ 이력번호	⑥ 구성개체수 (구성번호수)	⑦ 등급
2020-09-24	국내산돼지 고기	L12009245265001	지육	190002100675	8	-
				190006200846		
				190009903541		
				190014100479		
				190015700877		
				190026201023		
				190028000839		
				190031300715		

유의사항

- ① 연월일은 육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, 국내산돼지고기,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③ 육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.
- ④ 부위명은 육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. 다만,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이력번호는 육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.
- ⑥ 구성개체수는 육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.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"5"로 적습니다.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.
-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.

제 20200923-15 호

도축검사증명서

- 1.기축의 종류: 돼지 (후돈: 0두) 이용
- 2.두수 및 이력번호: 10 두 (190009903541)
- 3.중 량: 지 육 : 744 kg 내장 등 기타: kg
- 4.작 업 장 명: 제주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(제주LPC)
- 5.검 인 번 호: 제주02
- 6.도 축 일 자: 2020 년 09 월 23일
- 7.도축외뢰인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2길 21 (성 명 : 편명식 (주)팜스토리한냉)

8.수입소의경우

-수출국가명 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착일까지 6월 경과 여부:

비고 :

9.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Kg), 식용외의 용도전환(Kg)

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.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0 년 09 월 23 일

검사관 소 속 :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

성명 : 고영건 (서명 또는 인)

(수의사면허번호:9338)

발급번호: 1102-09230025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*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0년 09월 23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제주지원

성명 : 이준결

(인)

성명	판명식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317-85-08678
업소명	(주)팜스토리한냉	업태유형	
주 소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2길 21	043-211-7721	
업체명	제주LPC	등급판정일자	2020년 09월 23일
소재지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-31		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90009903541(643)	2				
190009903541(644)	1+				
190009903541(645)	2				
190009903541(646)	2				
190009903541(647)	2				
190009903541(648)	2				
190009903541(649)	2				
190009903541(650)	2				
190009903541(651)	2				
190009903541(652)	2				

전체 :	10두 (1+ 등급: 1	1 등급: 0	2 등급: 9	등외등급: 0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

발급횟수: 1 건 발행일자: 2020-09-23 18:38:10

*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*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